대구광역시달서구 출자·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4. 11. 29.
기획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○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자·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

○ 제 출 자: 달서구청장(디지털정보과장)

○ 발의일자: 2024. 11. 6.(수)

○ 회부일자: 2024. 11. 6.(수)

○ 상정 및 의결: 제308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(2024. 11. 29.)

2. 개정이유

○ 사이버안보 업무규정(대통령령) 개정(2024. 3. 5.)에 따른 지자체 위임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출자·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조례의 목적 정의(안 제1조)

○ 출자·출연기관의 범위 규정(안 제2조)

○ 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 규정(안 제3조)

○ 구청장의 지도·감독 규정(안 제4조)

4. 참고사항(관계법령 등)

○ 관계법령: 「사이버안보 업무규정」 제7조

○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○ 비용추계서: 비대상

○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○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
○ 성별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
○ 입법예고(2024. 10. 3. ~ 10. 23.) 결과: 의견 없음

○ 조례·규칙 심의 결과: 원안 가결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○ 본 제정조례안은 「사이버안보 업무규정」이 개정(2024. 3. 5. 공포)되어,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 중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 신설됨에 따라 위임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
○ 우리구 출자·출연기관의 사이버공격 및 위협을 예방하고 사이버안보 업무의 효율적·체계적인 수행을 위한 것으로 제정 취지, 상위법령 위배여부 등에 대한 검토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됨.

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지: 특이사항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